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9월 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월 7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9. 6.(월)	담당부서	투자유치과
담당과장	이승헌 과장(044-203-4080)	담 당 자	유은 서기관(044-203-4082)

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(9.16)으로,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

-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**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**이 **9.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어, **9월 16일부터 시행**된다고 밝힘

○ 이번 개정은 **첨단투자 촉진**을 위해 **첨단투자지구 지정,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**을 내용으로 하는 **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**('21.6.15 공포, 9.16일 시행)**의 후속조치**임

○ 첨단투자기준 등 **지구 지정·변경·해제 관련 요건·절차, 지원대상·내용, 위원회 구성·운영**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음

< 예 : 첨단투자지구 지정 요건 >

▸ 단지형 : (개념) 산업단지,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지정
(요건) 일정 투자기준 충족 첨단투자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, 즉시입주 가능, 5만m^2 이상, 면적 대비 60% 이상 투자수요 등

▸ 개별형 : (개념) 대규모 첨단투자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지정
(요건) 업종별로 투자금액 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투자기준 충족

□ 산업부는 "이번 개정을 통해 **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**함으로써, **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**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유은 서기관(☎ 044-203-40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